

의 안 번호	제2386호
--------------	--------

2023. 6. 14.(수) 10:00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

# 검 토 보 고 서

안건 : 1건(개정규칙안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 광 수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6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나철원 의원)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제2항~제3항)
  - 법 제70조에 따라 회기·폐회 중 위원회 세부 운영사항 규정  
(이전 회기 횟수 및 연속 차수 부여)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70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387호 ~ 제2391호
----------	--------------------

2023. 6. 13.(화) 10:00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자위

# 검 토 보 고 서

안건 : 5건(조례안 5)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7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현행) “공로가 현저한 자”
  - (개정)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 제1항
  - (현행)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 (개정)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지명 표기 수정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8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정기점검 대상(안 제4조)

-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목욕장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장, 권총사격장, 안마시술소 등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 고시원 등

### ○ 긴급점검 대상(안 제5조)

-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장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안 제6조)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 ○ 안전진단 대상(안 제7조)

-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안 제8조)

- 건축물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제외)
- 건축물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 ○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안 제9조)

-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4. 법적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제9조(긴급점검 대상), 제11조(안전진단대상), 제21조(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9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장성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지원대상(안 제3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 지원액 및 지원방법(안 제4조 및 제7조)

-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2023년 바우처 지원액 : 연 1회 9~13세 70천원, 14~18세 100천원

### ○ 바우처의 사용지역(안 제10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장성군 내로 한다.

### ○ 가맹점 지정(안 제11조)

- 장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생활지원 : 이·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
-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 이월 및 사용기한(안 제15조)

-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바우처의 사용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90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온종일 돌봄 목적,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해촉, 제척 등(안 제7조~안 제13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위탁, 지도·점검(안 제15조~안 제21조)

## 4.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91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근거 법령 개정, 일몰기한 연장,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하한 금액을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개정 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개정 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개정 전) 2022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25년 12월 31일

## ○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안 제11조)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추가) :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자동이체 전자송달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 4.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및 동법 제9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근거 법령 개정, 일몰기한 연장,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하한 금액을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의 안 번호	제2385호
--------------	--------

2023. 6. 14.(수) 10:30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건위

#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1건(개정조례안 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5호
- 제출일자 : 2023. 6. 1.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최미화 의원)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맞춰 만 나이 표기 삭제
-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청년 연령을 확대 조정(안 제3조제1호)
  - 現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8세 이상 49세 이하

## 4. 관련근거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맞춰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 2382호 ~ 제 2384호
----------	-------------------

2023. 6. 12.(월) 10:00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위

# 검 토 보 고 서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2호
- 제출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2. 6. 9.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을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718,979,222,440	744,944,580,938	541,146,432,008	203,798,148,930
일반회계	707,368,188,110	732,362,320,634	533,596,861,158	198,765,459,476
특별회계	11,611,034,330	12,582,260,304	7,549,570,850	5,032,689,454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203,798,148,930	67,565,463,970	39,398,459,950	24,761,687,570	7,200,677,405	33,189,384,843
일반회계	198,765,459,476	66,033,832,160	39,300,933,150	24,761,687,570	7,148,344,885	61,520,661,711
특별회계	5,032,689,454	1,531,631,810	97,526,800		52,332,520	3,351,198,324

## 나. 기금 결산

○ 2022년말 기금 현재액은 40,93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 30,626백만원
- 사회 복지 기금 : 3,378백만원
- 체육 진흥 기금 : 2,536백만원
- 재난 관리 기금 : 2,581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1,728백만원
- 식품 진흥 기금 : 83백만원

## 다. 채권 결산

○ 2022년말 채권 현재액은 7,81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 회 계 : 7,479백만원
- 특별 회 계 : 339백만원

## 라. 채무 결산

○ 2022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

## 마. 공유재산 결산

○ 2022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1,530,82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토 지 : 27,298천㎡ 313,488백만원
- 건 물 : 225천㎡ 240,619백만원
- 입 목 죽 : 5,728백만원
- 공 작 물 : 364,275백만원
- 기 계 기 구 : 6,276백만원
- 무 체 재 산 권 : 4,665백만원
- 용 익 물 건 : 399백만원
- 회 원 권 : 246백만원
- 건 설 중 인 재 산 : 595,131백만원

## 바. 물품 결산

- 2022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799개, 6,77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 연 도 말 :	753개	6,688백만원
· 신 규 취 득 등 :	61개	403백만원
· 매 각 :	15개	315백만원

## 사.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비 고
2022연도	2,817,285	12,960	2,804,325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A)	비 용(B)	운영차액(A-B)	비 고
2022연도	579,003	428,696	150,307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2,629,804	150,307	25,894	1,680	2,804,325

덧붙임 1. 2022 장성군 세입·세출결산 감사의견서 1책

2. 2022 장성군 세입·세출결산 결산서(재무제표, 부속서류 포함) 2책

#### 4. 법적(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2022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189억 7천9백만원, 세입결산액은 7,449억 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5,411억 4천6백만원, 세계잉여금은 2,037억 9천8백만원으로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함
- 결산감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임

※ 지적사항 : 2022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는 승인안 조서 26쪽부터 62 쪽을 참고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장성군 결산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함. 다만, 결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등으로 불용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 실적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강화 등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자금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의 기준금리안을 적절히 활용한 이자수입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 첨부서류 : 생략

## 2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3호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출일자 : 2023. 6. 1.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2022연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4,090,000,000원
- 예비비지출 결정액(일반회계) : 1,623,261,000원
- 예비비 지출액 : 1,443,638,910원
- 이 월 액 :
- 집 행 잔 액 : 179,622,090원
- 주요 지출내역
  - 코로나19 관련 지원 : 276,499,020원
  - 선거 지원 : 92,986,000원
  - 조직 개편 : 360,000,000원
  - 농업인 지원 : 170,341,000원
  - 상품권 발행 : 504,262,890원
  - 재난 지원 : 39,550,000원

#### 4. 법적(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090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액은
  - 코로나19 관련 지원 : 277백만원
  - 2022년 지방선거 지원 : 93백만원
  - 장성군 조직개편 지원 : 360백만원
  - 농업인 지원 : 170백만원
  -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 504백만원
  - 긴급재난 지원 : 40백만원
  - 총 6개 지출 분야에 1,444백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함

#### 6. 첨부서류 : 생략

### 3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84호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출일자 : 2023. 6. 1.
- 회부일자 : 2023. 6. 1.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단위: 원)

기금명 (운용부서)	전연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22,439,351,391	18,492,488,550	18,904,472,310	411,983,760	40,931,839,94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획 실)	13,085,659,250	17,540,052,370	17,540,052,370	0	30,625,711,620
식품진흥기금 (일자리경제실)	82,703,594	△86,010	7,013,990	7,100,000	82,617,584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3,404,923,674	△26,791,170	68,821,830	95,613,000	3,378,132,504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환 경 과)	1,527,063,290	201,540,850	331,540,850	130,000,000	1,728,604,14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2,108,831,818	472,117,240	634,455,880	162,338,640	2,580,949,058
체육진흥기금 (체육사업소)	2,230,169,765	305,655,270	322,587,390	16,932,120	2,535,825,035



#### 4. 법적(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5.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종에 40,932백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8,90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12백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6. 첨부서류 : 생략